

「구미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역보건법」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과태료 부과·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수정(안 제1조, 제2조)
-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수정(안 별표)
 - 「지역보건법」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
 - 「지역보건법」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, 「지역보건법」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조정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역보건법」
-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지역보건법」이 2023년 3월 개정됨에 따라 보완·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수준으로 맞추어 1·2·3차 위반 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필요한 것으로 판된되며,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위배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집행기관에서는 상위법 개정 등 조례 개정 사유 발생 시 적기적시에 조례 등을 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통한 업무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길 바랍.